

부산지방법원 2022. 5. 3 선고 2021가단33716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김철, 이한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미영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2. 4. 5.

판 결 선 고 2022. 5. 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35분의 7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2020. 11. 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20. 11. 6. 접수 제70066호로 마친 B 지분 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 연대보증인 B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가단78111 구상금 청구 소를 제기하여 2018. 11. 28. '주식회사 C,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52,828,632원과 그 중 260,122,356원에 대하여는 2018. 6. 29.부터, 91,051,446원에 대하여는 2018. 7. 17.부터 각 2018. 10. 11.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8. 12. 19.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B는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35분의 7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20. 11. 5.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20. 11. 6. 접수 제7006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광양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B에 대한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B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것으로 보이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다. 피고의 선의 여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양도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이었다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양도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3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이 B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 1) B와 피고는 시동생과 형수 사이다.
- 2) 이 사건 매매계약 상 매매대금은 170,000,000원이고, 중도금 100,000,000원의 지급기일은 2020. 11. 9.인데 피고는 B에게 2020. 11. 6. 중도금을 미리 지급하였다.
- 3)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피고는 2020. 11. 11. B에게 잔금 65,0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한 다음날인 2020. 11. 6.에 바로 B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고, 피고는 위와 같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은 후 2020. 11. 11.에야 B에게 7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우

별지